

대구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나86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나8663 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 12. 11 선고 2019가단69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20. 5. 6.

판결 선고 2020. 6. 3.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 12. 11. 선고 2019가단69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08. 4. 22. 접수 제51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12. 28. 접수 제136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04. 12.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던 중, F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2008. 4. 2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12. 28.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 4.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피고가 이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무효이다.

2) 원고는 2009. 12.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F은 2009. 12.경 원고에게 자신의 아들인 피고를 영농후계자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하다며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경북 군위군 G답 3,036m²의 등기 명의만을 피고 명의로 이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원고는 위 F의 부탁을 받아들여 피고 측에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위 경북 군위군 G 답 3,036m²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면서 이와 더불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50882 판결).

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판단

1)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 변론 전체의 취지1)에 의하여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피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08. 4. 18. 피고와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판단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09. 12. 28. 피고에게 경북 군위군 G 답 3,036m²에 관하여 2009.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2)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 내용은 피고가 원고 몰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2018. 12. 27. 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법무사 H이 진술하기를 원고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작성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은 법무사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권준범

판사에혁준

판사김대규

별지

1) 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경찰 의견서에 의하면, 원고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놓은 인감도장을 피고측이 임의로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기록 제64쪽, 제109쪽 참조).